

#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청원연구년의 구분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급 청원연구년”이라 함은 국제적인 탁월한 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연구논문, 예술창작 등)을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유급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무급 청원연구년”이라 함은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무급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3. “청원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청원연구년을 승인받아 청원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① 중요한 연구성과가 기대되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청원연구년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은 청원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원연구년 교원은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근속기간 및 제5조 제6호의 통산기간(3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또는 특별연구년을 수행한 교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청원연구년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청원연구년은 재직 중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청원연구년의 신청 제한) 청원연구년 신청 또는 개시의 제한에 대한 사항은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절차) 청원연구년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원연구년 개시 6개월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원연구년 개시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청원연구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원연구년 기간 중 연구 및 활동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보완대책 및 소속학과 교원현황(별지 제4호 서식)
5. 임상전임교원의 경우 해당병원장, 경희의료원장 또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의 동의서(자유 양식)
6. 기타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선정의 기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을 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1. 연구활동 제안내용
2. 일반연구년, 특별연구년, 청원연구년
3. 본교 재직연수
4. 교원업적평가 실적
5. 연구수행능력
6.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7. 청원연구년 기간 중 국내외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여부
8. 이전 연구년 기간 중의 연구실적물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 및 정도

제7조(청원연구년 교원 수의 비율) 청원연구년 교원의 수는 소속 대학(원), 학부, 학과(전공) 재직 전임교원 수의 비율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선정절차) 소속 대학(원)장은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연구년 선정 여부를 심의한 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대학(원)교원인사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선정의 결정) ① 청원연구년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소속 대학(원)장은 제1항의 선정 결과를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청원연구년 교원의 처우) 청원연구년 교원의 처우는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준용한다. 단, 무급 청원연구년 교원에게는 연구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청원연구년 교원의 의무 등) ① 청원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해당 학기 시작 1주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청원연구년교원복귀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고 즉시 복귀 하여야 한다.

② 청원연구년 교원은 청원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활동 실적물을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원연구년 교원이 1년의 청원연구년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6] 의 교원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6개월의 청원연구년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실적의 1/2)의 1.5배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청원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청원연구년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연구업적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경희대학교 청원연구년 지원에 의한 결과임”이라는 글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연구업적은 논문게재 또는 저서 출판에 대한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사표기를 하지 않은 연구업적물을 청원연구년 실적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청원연구년 교원은 타대학에 출강하거나 정기적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등 공공 기관의 지원정책에 의한 산학협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겸직 승인을 득한 후 겸직할 수 있다.

⑤ 청원연구년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해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해외여행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원연구년 교원은 청원연구년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청원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을 본교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⑦ 청원연구년 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청원연구년 종료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교원보수규정」 제12조 제2호를 준용하여 보수를 감액지급한다.

⑧ 보수 외에 별도의 교비 연구비를 지급받은 청원연구년 교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청원연구년 기간 중에 지급받은 교비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제11조 제3항의 연구실적을 미제출하거나 제8항의 사항을 미이행한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후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12조(의무이행 평가)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청원연구년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속 대학(원)에서 해당 교원의 이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심의 결과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제출한 연구실적이 일반연구년 의무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원연구년을 일반연구년으로 대체하여 일반연구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교무처장은 의무실적 제출기한 직후 업적평가에서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별표 1] 연구실적 평정기준에 의거하여 청원연구년 의무 연구실적 미충족분에 상응하는 점수를 감점한다.

2. 제출한 연구실적이 일반연구년 의무 연구실적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의무실적 제출기한 직후 업적평가 시 청원연구년 의무 연구실적 미충족분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평정점수를 감점하고, 해당 교원은 미충족된 청원연구년 의무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관부서 등) ① 청원연구년 교원의 선정 등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업무는 각 대학(원)장이 관장하고, 청원연구년제도에 관한 관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② 연구처장은 청원연구년 교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를 매 학기 각 캠퍼스 학무부총장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교무처장 및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3조(의무이행 평가) 제2항은 2022학년도 2학기 청원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② 교무위원 보직 연속 2년 수행에 따라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청원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모든 교원은 교수 연구년제에관한규정(2022.07.01.시행) 제14조의 특별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연구년 신청서(유급, 무급)

## 청원연구년 신청서(유급, 무급)

소속대학(학부) 및 학과(전공) 공)	대학·학부 과(전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근무 기간	19 . . ~ 20 . . (만 년 개월)		
체류 예정지				
연구년 및 해외파견 경력				
연구/파견기관	기간	목적 및 사유(연구년, 파견)	재원	의무 연구실적 제출 여부
	. . . . - . . . ( )			
연구년 신청 사유 및 목적				
신청기간	20 . . - 20 . . ( 년 개월)			
연구년 기간중의 연락처	주소 : 전화 :			

위와 같이 청원연구년(유급, 무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연구년 기간 중 연구 및 활동계획서

## 청원연구년 기간 중 연구 및 활동계획서

소 속	대학·학부 과(전공)	성 명	한글 : 한자 :
연구년 신청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체 류 지 (구체적으로)			
연 구 및 활 동 계 획			

\*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공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 본 계획서의 체류지, 연구 및 활동계획은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가능함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 서 약 서

소 속 : 대학(원)      학과(전공)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청원연구년을 수행함에 있어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원연구년 교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일반연구년 의무실적 미제출시 제한사항】

- 연구년 신청안내일 기준

1. 연구년 신청 제한(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
2.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 제한(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
3. 명예퇴직 제한(교원명예퇴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4. 명예교수 추대 제한(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5. 퇴직 후 비전임교원 및 강사 임용 제한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9항)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직무보완대책 및 소속 학과 교원 현황

직무보완대책 및 소속 학과 교원 현황

소 속 : 대학(원)      학과

직급 :

성명 :

1. 담당직무 보완대책

학년도/학기	청원연구년 신청자			대행자		
	학년	과목명	시간	학과(전공)	성명	비고

2. 소속 대학(원) 학과(전공) 교원현황(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포함. 행정실장 작성)

가. 소속 학과 교원현황

직급	현원	유고자(성명/유고 사유)	비고

※ 유고자 날에는 현재 소속 학과(전공)의 연구년자, 휴직자, 과견자, 여행예정자를 포함 기록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청원연구년 교원 복귀 신고서

## 청원연구년 교원 복귀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 . .
청원연구년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구기관 및 대학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연구제목			
학술지 게재 예정일	년 월 예정		
발표예정 학술지명			

위 본인은 상기 청원연구년을 마치고 년 월 일부로  
대학(원)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20 . . .

## 신 청 인 (인)

# 대학(원)장 (인)

#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